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관의 장 |
| 람 | |

제542호 2014. 10. 1.(수)

【조 례】

| | | |
|-------|--------------------------------|----|
| 제940호 | 공주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1 |
| 제941호 |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6 |
| 제942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 제943호 |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 제944호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 제945호 |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2 |
| 제946호 |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27 |
| 제947호 |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 | 40 |

【규 칙】

| | | |
|-------|-------------------------|----|
| 제472호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8 |
|-------|-------------------------|----|

【훈 령】

| | | |
|-------|---------------------------|----|
| 제243호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51 |
|-------|---------------------------|----|

【예 규】

【고 시】

| | | |
|------------|---|----|
| 제2014-132호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 58 |
| 제2014-135호 |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63 |
| 제2014-136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6 |

【공 고】

| | | |
|-------------------|--|-----|
| 관광경영사업소 제2014-13호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
| 보건소 제2014-2호 |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6 |
| 제2014-1150호 |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8 |
| 제2014-1197호 |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5 |
| 제2014-1198호 |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0 |
| 제2014-1203호 |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40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0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
에 관한 자문과 그 밖에 시정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
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임직원

2. 시민대표, 전문적 소양을 지닌 시민 등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정책자문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책자문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거나 시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

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 제안 등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경제도시 분과 : 산업, 경제, 도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분과 : 역사,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분과 : 교육, 복지, 보건, 보훈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 분과 : 농업, 농촌, 환경, 생태에 관한 사항
5. 혁신개발 분과 : 행정, 혁신,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
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1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 범위)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공개) ①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시장은 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시 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필요하면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장 교육 홍보 및 지원 등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장소 및 회의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
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 분
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23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 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 배우자 | 5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입 양 | 본인 | 20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⑬ (생략)</p> <p><신 설></p> |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과 같음)</p> <p>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p> |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3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택당직수당은 20,000원” 을 “재택당직수당은 30,000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시간이상” 을 “3시간을 초과하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50,000원, <u>재택당직수당은 20,000원을</u>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재택숙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u>3시간 이상</u> 대기근무하고 재택숙직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 <p>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 -----<u>재택</u> <u>당직수당은 30,000원</u>----- -.</p> <p>② ----- -----<u>3시간을</u> <u>초과하여</u> ----- -----.</p> |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에
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경제과장” 을 “기업경제과장” 으로 한다.

② 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제과” 를 “기업경제과”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제과장” 을 “기업경제과장” 으로 한다.

③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제과” 를 “기업경제과” 로 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사 무 회 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
| 총 계 | 998 | - | | | | |
| 정 무 직 계 | 1 | 1 | | | | |
| 시 장 | 1 | 1 | | | | |
| 일 반 직 계 | 960 | - | | | | |
| 4 급 | 6 | 4 | 1 | 1 | | |
| 5 급 | 52 | 26 | 2 | 5 | 3 | 16 |
| 6 급 이 하 | 902 | - | | | | |
| 별 정 직 계 | 2 | | | | | |
| 6급상당 이하 | 2 | | | | | |
| 연 구 직 계 | 5 | - | | | | |
| 연 구 관 | | | | | | |
| 연 구 사 | 5 | - | | | | |
| 지 도 직 계 | 30 | - | | | | |
| 지 도 관 | 3 | | | 3 | | |
| 지 도 사 | 27 | -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p>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p> <p>안전산업국에 안전관리과, <u>경제과</u>, 건설과, 산림과, 도시재생과, 허가과, 교통과, 환경과, 청소과, 수도과를 둔다.</p> <p>②(생략)</p> | <p>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p> <p>-----<u>기업경제과</u></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에
서 의결된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5호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라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 하여야 한다.

1. 공주교육지원청 또는 공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아동복지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
취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에
서 의결된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6호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
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공

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관되지 않는 일반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하 “안전기간”이라 한다)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이하 “특별기간” 이라 한다)”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장은 매년 4월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에 대한 물놀이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제5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기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줄(투척이 가능한 줄)·구명조끼 등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

는 정비하여 안전기간 시작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4월말까지)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 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물놀이 장소로 부적합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관리하여야 한다.

1.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2.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3.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지역
4. 주변공사 등 주변여건 변화에 의해 사고 위험이 유동적으로 높아지

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는 지역

5. 그밖에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물놀이를 위한 출입과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안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5.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

를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공주시 인명구조대, 공주시 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잠수협회 등 재난안전 예방과 구조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공주시 안전산업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시설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안에서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그 외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기간은 안전관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상과 물놀이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와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장)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계약 해지)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의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안전관리요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시장은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부상·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

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줄(투척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연간 4시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기간 동안에 물놀이 안전전담조직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기간 중 휴일에는 공무원으

로 비상 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휴일 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의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안전관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유선보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고,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할 경우에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

개를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 등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5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안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인터넷, SNS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제22조제1항 관련)

즉시보고

| | |
|------------------|--|
| 1. 사고일시 | 20 년 월 일() 00:00 (신고접수: . . :) |
| 2. 장 소 | |
| 3. 안전관리 요원 배치 | |
| 4. 기상상태 | |
| 5.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 <p>○인명피해 :</p> <p>○인적사항 :</p> |
| 6. 사고원인(경위) : | |
| 7. 조치내용 : | |
| 8. 그 밖에 참고사항 | |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9. 22)에
서 의결된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47호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한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료"란 운영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위탁자"란 센터의 소유권자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센터를 운영·관리하기로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특정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인 고용 및 업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을 주 3일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이용자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질환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운영

제7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된 물품만을 판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술과 담배 등)은 심의에서 제외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의료인의 수를 3명으로 구성한다.

1. 환경성질환 전문의

2.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인정 받은 사람

3. 환경·보건·복지에 관련된 단

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4.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관리·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때에는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나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공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충당할 수 있다.

1. 지방비
2.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3.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품, 기부금품 등
4. 시장은 센터의 운영·관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프로그램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선정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숙박시설 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숙박을 원할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한옥마을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체험·상담·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2일 이상 머무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한 가족
3. 그 밖에 제1호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 중 숙박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 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따른다.

제3장 보칙

제15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당해 연도 운영성과를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보고서 및 문서 등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관련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요구사항을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72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및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을 “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이하(옥탑층 등 그 밖의 구조물의 높이를 포함한다.)”를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상업용 고층건축물 등</u>”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u>공주시 도시계획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u>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u></p> <p>4. ~ 8. (생 략)</p> <p>제8조(건축물의 높이) ①·② (생 략)</p> <p>③ <u>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층수변화에 따른 튀어나온 경관 및 부조화를 방지하도록 사업 대상지 경계부분의 주동의 최고높이는 40m 이하(옥탑층 등 그 밖의 구조물의 높이를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u> 다만, 폭 25m 이상인 도로(주동이 접한 대지길이의 1/2 이상이 폭 25m 이상이어야 한다), 공원 및 완충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이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u>에 따른 일반상업지역</u>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8조(건축물의 높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이하</u>----- ----- ----- ----- ----- -----.</p>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43호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
라 한다)에 의거” 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서” 로 한다.

제2조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 를 “이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단위유역”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조 중 “한다” 를 “하고, 2016년부터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으로 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량관리단위유역별개발부하량” 을 “단위유역별개발부하량” 으로 하고, “개발부하량이 1.0킬로그램/일 이하” 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개발부하량이 1.0킬로그램/일 이하이고 총인(T-P)의 개발부하량이 0.05킬로그램/일 이하”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실시되는 공주시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개발계획 사업 중 우선협의 개발사업 선정
2. 현안 및 시급 사업 발생시 우선협의 개발사업 재조정
3. 개발부하량 가할당 및 회수 조치 사항
4.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관한 협의 사항
5. 그 밖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관계된 각 호의 국장과 담당관·과별 부서장이 된다.

1. 시민국장
2. 기획담당관
3. 문화체육과장
4. 관광과장
5. 기업경제과장
6. 건설과장
7. 도시재생과장
8. 허가과장
9. 환경과장

- 10. 수도과장
- 11. 축산과장
- 12. 산림과장
- 13. 농업과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질관리담당이 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실시되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 준수와 원활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u>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서 ----- ----- ----- -----.</p> |
| <p>제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u>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p> | <p>제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u>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 -----.</p> |
| <p>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총량관리단위유역</u>”이라 함은 「<u>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p> | <p>제3조(정의) ----- -----.</p> <p>1. -----<u>이란</u>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u>단위유역</u>”이라 한다).</p> |

| | |
|--|--|
| <p>2. (생략)</p> <p>3. (생략)</p> <p>제4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한다.</p> <p>제7조(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u>위원회 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과 관련된 해당 국장과 담당관·과장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회의 기능은 별표 1의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u></p> <p>④ (생략)</p> <p>제8조(개발사업 선정) ① <u>총량관리 단위유역별개발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u></p> |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 ----- <u>하고, 2016년부터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으로 한다.</u></p> <p>제7조(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8조(개발사업 선정) ① <u>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u>----- ----- -----.</p> |
|--|--|

| | |
|---|---|
| <p>다만, <u>개발부하량이 1.0킬로그램/일 이하인</u> 소규모개발사업은 위원회의 협의 없이 담당부서에서 선정과 가할당 할 수 있다.</p> | <p>--- <u>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u>의 <u>개발부하량이 1.0킬로그램/일 이하이고 총인(T-P)의 개발부하량이 0.05킬로그램/일 이하인</u> ----- ----- -----.</p> |
|---|---|

공주시 고시 제2014-132호

2013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2014. 9. 22.)된
2013회계연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공 주 시 장 오 시 덕

I.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1 총 결산 규모

(단위 : 원)

| 회계별 | 예산현액(A) | 세입결산액(B) | 세출결산액(C) | 잉여금(D=B-C) |
|------|-----------------|-----------------|-----------------|-----------------|
| 합 계 | 672,841,699,580 | 687,005,738,698 | 520,323,730,270 | 166,682,008,428 |
| 일반회계 | 572,759,575,120 | 583,813,923,860 | 463,997,012,590 | 119,816,911,270 |
| 특별회계 | 100,082,124,460 | 103,191,814,838 | 56,326,717,680 | 46,865,097,158 |

○ 잉여금(166,682,008,428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 | |
|-------------|---|-----------------------|
| ▪ 이 월 금 | : | 94,309,784,450 |
| - 명 시 이 월 | : | 43,279,307,800 |
| - 사 고 이 월 | : | 10,096,178,010 |
| - 계 속 비 이 월 | : | 40,934,298,640 |
| ▪ 보조금 사용잔액 | : | 6,121,987,890 |
| ▪ 순세계 잉여금 | : | 66,250,236,088 |

2 세입예산 결산 내용

(단위 : 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 |
|-------|-----------------|-----------------|-----------------|---------------|----------------|
| | | | | 결손처분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합 계 | 672,841,699,580 | 707,995,899,158 | 687,005,738,698 | 1,289,847,190 | 19,700,313,270 |
| 일반회계 | 572,759,575,120 | 599,877,637,990 | 583,813,923,860 | 1,289,847,190 | 14,773,866,940 |
| 특별회계 | 100,082,124,460 | 108,118,261,168 | 103,191,814,838 | 0 | 4,926,446,330 |

③ 세출예산 결산 내용

(단위 : 원, %)

| 회계별 | 예산액(A) | 예산현액(B) | 지출액(C) | 이월액(D) | 집행잔액(E) =(B-C-D) |
|------|-----------------|-----------------|-----------------|----------------|---------------------|
| 총 계 | 591,100,000,000 | 672,841,699,580 | 520,323,730,270 | 94,309,784,450 | 58,208,184,860 |
| 일반회계 | 512,400,000,000 | 572,759,575,120 | 463,997,012,590 | 83,134,202,410 | 25,628,360,120 |
| 특별회계 | 78,700,000,000 | 100,082,124,460 | 56,326,717,680 | 11,175,582,040 | 32,579,824,740 |

II.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 회 계 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합 계 | 29,274,219,168 | 12,602,948,068 | 22,960,416,388 | 18,916,750,848 |
| 일 반 회 계 | 6,143,104,500 | 778,478,550 | 797,166,550 | 6,124,416,500 |
| 특 별 회 계 | 23,081,114,668 | 11,790,881,848 | 22,099,662,168 | 12,772,334,348 |
| 기 금 | 50,000,000 | 33,587,670 | 63,587,670 | 20,000,000 |

Ⅲ. 채무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 회계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상 환 소 멸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합 계 | 34,290,000,000 | 7,500,000,000 | 21,190,000,000 | 0 | 20,600,000,000 |
| 일반회계 | 34,290,000,000 | 7,500,000,000 | 21,190,000,000 | 0 | 20,600,000,000 |

Ⅳ.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 구분 용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증 가 | 감 소 | | |
| 합 계 | 827,719,267,692 | 55,315,877,789 | 27,439,709,965 | 855,595,435,516 | |
| 행 정 재 산 | 계 | 798,791,487,569 | 54,834,736,469 | 17,612,814,168 | 836,013,409,870 |
| | 공공용 | 553,505,574,195 | 47,242,677,329 | 10,014,770,438 | 590,733,481,086 |
| | 공 용 | 158,846,533,275 | 3,041,837,050 | 7,225,678,570 | 154,662,691,755 |
| | 기업용 | 9,278,281,270 | 1,838,001,970 | 264,281,000 | 10,852,002,240 |
| | 보 존 | 77,161,098,829 | 2,712,220,120 | 108,084,160 | 79,765,234,789 |
| 일반재산 | 28,927,780,123 | 481,141,320 | 9,826,895,797 | 19,582,025,646 | |

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원)

| 전 년 도 말 현 재 액 | | 당 해 연 도 증 감 내 역 | | | |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 |
|------------------|---------------|-----------------|-------------|-----|-------------|--------------------|---------------|
| 수량 | 금 액 | 취 득 | | 처 분 | | 수량 | 금 액 |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 1,020 | 9,430,599,000 | 57 | 619,700,130 | 6 | 177,398,000 | 1,071 | 9,872,901,130 |

VI. 재무보고서

1]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원)

| 자 산 | 부 채 | 순 자 산 |
|---------|----------------|-------------------|
| 유 동 자 산 | 37,178,248,020 | 2,752,289,411,389 |
| 투 자 자 산 | | |
| 고 정 자 산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계 | 37,178,248,020 | 2,752,289,411,389 |

- 2013.12.31까지 총 자산은 2,789,467,659,409원이며, 총 부채는 37,178,248,020원이고, 순자산은 2,752,289,411,389원임.

2]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원)

| | | | |
|-------|-----------------|--------|------------------|
| 총 수 익 | 493,461,670,126 | 총 비 용 | 401,271,570,394 |
| | | 재정운영결과 | (92,190,099,732) |

- 2013회계연도의 총수익은 493,461,670,126원이며, 총 비용은 401,271,570,394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92,190,099,732)원임.

3]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원)

| | |
|-------------------|-------------------|
| 1. 기 초 순 자 산 | 2,652,437,646,202 |
| 2. 재 정 운 영 결 과 | (92,191,099,732) |
| 3. 순 자 산 의 증 가 | 34,698,162,415 |
| 4. 순 자 산 의 감 소 | 27,036,496,960 |
| 5. 기말순자산(1+2+3-4) | 2,752,290,411,389 |

- 기초순자산은 2,652,437,646,202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2,191,099,732)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34,698,162,415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27,036,496,960원이고 2013년도 기말순자산은 2,752,290,411,389원임.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당복합농공단지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1. 농공단지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나. 면 적 : 지정 : 147,933.0㎡
변경 : 147,475.8㎡ (감457.2㎡)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 건설자재 생산기업인 한일시멘트(주)의 시멘트(레미콘, 레미탈)공장을 입지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9월 30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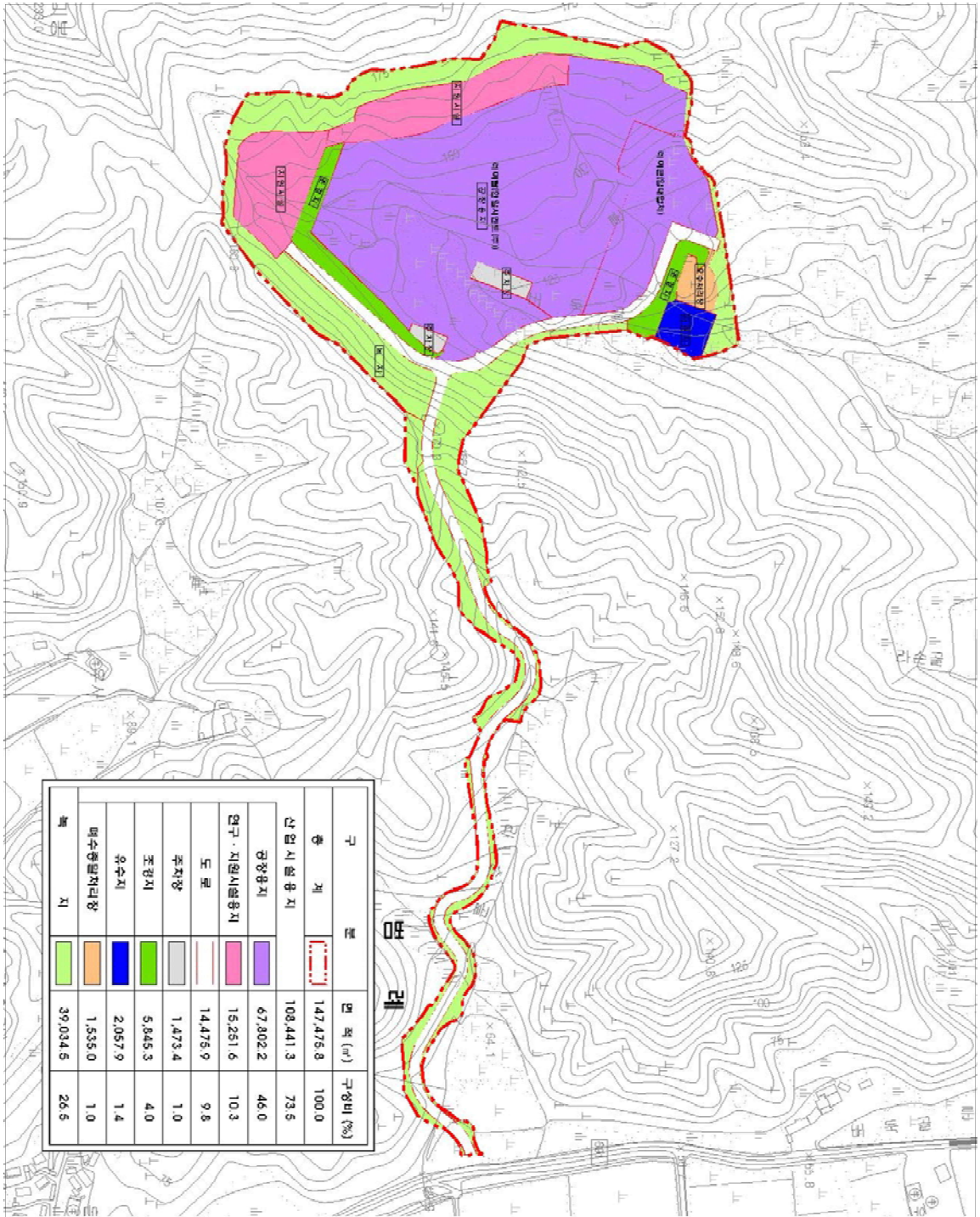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표 >

| 구분 | 면적 (㎡) | | | 구성비(%)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총 계 | 147,933.0 | 감) 457.2 | 147,475.8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08,441.9 | 감) 0.6 | 108,441.3 | 73.5 |
| 녹 지 | 39,491.1 | 증) 456.6 | 39,034.5 | 26.5 |

< 세부개발계획(변경)표 >

| 구분 | 면적 (㎡) | | | 구성비(%)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총 계 | 147,933.0 | 감) 457.2 | 147,475.8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08,441.9 | 감) 0.6 | 108,441.3 | 73.5 |
| 공장용지 | 67,802.2 | - | 67,802.2 | 46.0 |
| 연구·지원시설용지 | 15,251.6 | - | 15,251.6 | 10.3 |
| 도 로 | 14,476.5 | 감) 0.6 | 14,475.9 | 9.8 |
| 주차장 | 1,473.4 | - | 1,473.4 | 1.0 |
| 조경지 | 5,845.3 | - | 5,845.3 | 4.0 |
| 저류지 | 2,057.9 | - | 2,057.9 | 1.4 |
| 폐수처리장 | 1,535.0 | - | 1,535.0 | 1.0 |
| 녹 지 | 39,491.1 | 감) 456.6 | 39,034.5 | 26.5 |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

◦ 도로(변경) 총괄표

| 구 분 | | 노선수 | 연 장 (m) | 면 적(㎡) |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 |
| 합 계 | | 2 | 1,362.3 | 14,476.5 | 14,475.9 | | |
| 일 반 도 로 | 중로 | 소 계 | - | - | - | | |
| | | 3 류 | - | - | - | | |
| | 소로 | 소 계 | 2 | 1,362.3 | 14,476.5 | 14,475.9 | |
| | | 1 류 | 2 | 1,362.3 | 14,476.5 | 14,475.9 | |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구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구지도로 | 512.8 | 오페수 처리장 | 연구·지원 시설용지 | 단지내도로 | 농공단지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구지도로 | 849.5 | 가산리 44-6번지 | 소로1-1 | 진입도로 | | | |
| 계 | | | | | | 1,362.3 | | | | | | |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㉔-1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 510.3 | | |
| 기정 | ㉔-2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 963.1 | | |

3) 공원·녹지계획(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 |
| 기정 | ㉔ | 녹지 | 완충녹지 |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 39,491.1 | 39,034.5 | | |

4)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 ²)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④ | 유수지 | 저류시설 |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 2,057.9 | | |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장)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 ²)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③ |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 1,535.0 | | |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총 용수량 (m ³ /일) | 공업용수량 (m ³ /일) | 생활용수량 (m ³ /일) | 비 고 |
|---------------------------|---------------------------|---------------------------|------------|
| 280 | 200 | 80 | 단지 내 심정 개발 |

나. 오·폐수처리계획

| 구 분 | 용수량 (m ³ /일) | 계획일 오·폐수량 (m ³ /일) | 비 고 |
|--------|-------------------------|-------------------------------|---------------------------------|
| 생활계 오수 | 80 | 70.46 | 분뇨 + 잡배수 |
| 산업계 폐수 | 200 | - | 산업계폐수는 전량 재이용수로 사용되므로 폐수발생량은 없음 |
| 계 | 280 | 70.46 | - |

다.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구 분 | 합계 | 폐기물 처리계획 | | | |
|--------|-------|----------|-------|-------|-------|
| | | 소 각 | 매 립 | 재활용 | 위탁처리 |
| 총발생량 | 2.213 | 0.017 | 0.012 | 0.044 | 2.140 |
| 생활폐기물 | 0.073 | 0.017 | 0.012 | 0.044 | - |
| 사업장폐기물 | 2.140 | - | - | - | 2.140 |

라. 전력공급계획

| 구 분 | 부지면적 (㎡) | 전력원단위 (KW/천㎡·월) | 부하율 (%) | 전력수요 (MWh/년) | 비 고 |
|------|-----------|-----------------|---------|--------------|-----|
| 전력수요 | 108,441.3 | 207.52 | 40 | 9,000 | |

마. 통신공급계획

| 구 분 | 부지면적 (㎡) | 계획인구 (명) | 산정원단위 | 소요대수 (대) | 비고 |
|------|-----------|----------|--------|----------|----|
| 통신수요 | 108,441.3 | 134 | 1회선/5인 | 27 | |

9. 수용 ·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게재 생략)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무상귀속 종류와 그 세부목록 - 해당사항 없음

▣ 의당복합농공단지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 147,933.0㎡

변경 - 147,475.8㎡ (감457.2㎡)

다. 변경사항 : 사업부지 경계 및 사업부지내의 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
측량 결과 토지이동(축척변경)에 의한 오차

5. 사업의 개발기간

◦ 개발기간 : 기정-2008년 ~ 2014년 9월 30일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실음 생략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제9호, 10호와 동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계도서는 공주시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에게 고시합니다.

9. 행위의 제한

◦ 의당복합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147,933.0 | 감) 457.2 | 147,475.8 | 100.0 | |
| 관리지역 | 147,933.0 | 감) 457.2 | 147,475.8 | 100.0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147,933.0 | 감) 457.2 | 147,475.8 | 100.0 | |
| 농림지역 | - | | -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 | | 기 정 | 변 경 | | |
| ① | 의당면 가산리 | 계획관리지역 : 147,933.0㎡ | 계획관리지역 147,475.8㎡ | 100.0 | 사업부지 경계 및 사업부지내의 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토지 이동(축척변경)에 의한 오차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 | 의당복합 농공단지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의당면 가산리 | 147,933.0 | 2009. 2. 4 | |
| 변 경 | - | 의당복합 농공단지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의당면 가산리 | 147,475.8 | 2009. 2. 4 | |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① | 의당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 유통형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147,933.0 | 감)457.2 | 147,475.8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
| ① |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정 : 147,933.0㎡ ○ 변 경 : 147,475.8㎡ <li style="padding-left: 20px;">감)457.2㎡ | 사업부지 경계 및 사업부지내의 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토지이동 (측척변경)에 의한 오차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구지도로 | 512.8 | 오페수 처리장 | 연구·지원 시설용지 | 단지내도로 | 농공단지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구지도로 | 849.5 | 가산리 44-6번지 | 소로1-1 | 진입도로 | | | |
| 계 | | | | | | 1,362.3 | | | | | |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⑤-1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입 일원 | 510.3 | | |
| 기정 | ⑤-2 | 주차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입 일원 | 963.1 | | |

다.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⑦ | 녹지 | 완충녹지 | 의당면 가산리 산8-10입 일원 | 39,491.1 | 감)456.6 | 39,034.5 | | |

■ 녹지(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⑦ | 녹 지 | • 녹지면적 조정 | • 사업부지 경계 및 사업부지내의 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토지이동(축척변경)에 의한 오차 | |

라. 방재시설

■ 우수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④ | 우수지 | 저류시설 |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입 일원 | 2,057.9 | | |

마.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③ |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장 |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입 일원 | 1,535.0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위 치 | 도면번호 | 면적 (㎡) | | 가구 및 획지 |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 | | | | | 기정 | 변경 | |
| 합 계 | | 147,933.0 | 147,475.8 | - | 147,933.0 | 147,475.8 | |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①~⑧ | 147,933.0 | 147,475.8 | ①~② | 83,053.8 | 83,053.8 | 산업시설 (공장 및 지원시설) |
| | | | | ③~⑧ | 25,388.1 | 25,387.5 |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저류지, 조경지, 오수처리장) |
| | | | | ⑦ | 39,491.1 | 39,034.5 | 녹지용지 |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공장용지(변경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 비 고 |
|------|------|----------|-----------------|----------|---------|
| | | | 위 치 | 면적 (㎡) | |
| 합 계 | | 83,053.8 | | 83,053.8 | |
| ② | ②-1 | 83,053.8 |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 7,290.9 | 연구·지원시설 |
| ② | ②-2 | |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 7,960.7 | 연구·지원시설 |
| ① | ①-1 | | 가산리 60-1번지 일원 | 56,710.6 | 공장용지 |
| ① | ①-2 | | 가산리 60-3번지 일원 | 11,091.6 | 공장용지 |

■ 공공시설용지(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 획 지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
| | | | | | 기정 | 변경 | |
| 합 계 | | 25,388.1 | 25,387.5 | | 25,388.1 | 25,387.5 | |
| ⑤ | ⑤-1 | 25,388.1 | 25,387.5 |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510.3 | 510.3 | 주차장 |
| ⑤ | ⑤-2 | | |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 963.1 | 963.1 | |
| ⑧ | ⑧-1 | | |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 5,845.3 | 5,845.3 | 조경지 |
| ④ | ④-1 | | |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 2,057.9 | 2,057.9 | 저류지 |
| ③ | ③-1 | | |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 1,535.0 | 1,535.0 | 폐수종말처리장 |
| ⑥ | ⑥-1 | | |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14,476.5 | 14,475.9 | 도로 |

■ 녹지용지(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 획 지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 |
| | | | | | 기정 | 변경 | |
| 합 계 | | 39,491.1 | 39,034.5 | | 39,491.1 | 39,034.5 | |
| ⑦ | ⑦-1 | 39,491.1 | 39,034.5 |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 39,491.1 | 39,034.5 | 완충녹지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공장용지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 ② | ②-1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 |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 (층수) | 20m 이하 (4층 이하) |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 배치·형태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 | | 건축선 | 3m | | | | | |
| | | ② | ②-2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 |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60% 이하 | | | 높이 (층수) | 20m 이하 (4층 이하)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 배치·형태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 색채 | 주조색 | |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보조색 | |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 건축선 | 3m | | | | | | | |
| ① | ①-1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 | | 용도 | 허용 |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 (층수) | 20m 이하 (4층 이하) (구조물높이 85m 이하) |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 배치·형태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 | | 건축선 | 3m | | | | | |
| ① | ①-2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3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 | | |
| | | | 불허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 (층수) | 20m 이하 (4층 이하) (구조물높이 85m 이하) |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 배치·형태 |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 색채 |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 | | 건축선 | 3m | | | | | |

■ 공공시설용지

| 가구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⑤ |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⑤-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 | | |
| | | | 불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 (층수) | 4층이하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배치·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색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함 | | | |
| | | 건축선 | 3m | | | | |
| ④ | ④-1 (저류지)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 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 포함) | | | |
| | | | 불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 (층수) | 4층이하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배치·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색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 | 건축선 | 3m | | | | |
| ③ | ③-1 (폐수종말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 | | |
| | | | 불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
| | | 건폐율 | 60% 이하 | 높이 (층수) | 4층이하 | | |
| | | 용적률 | 150% 이하 | | | | |
| | | 배치·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 | | | |
| | | 색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 | | |
| | | 건축선 | 3m | | |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신관동 35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재생과(☎041-840-854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10. 1.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재생과 041-840-854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7 | 공주 신관동 효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주시 신관동 350번지 일원 | 20,816 | 감)169 | 20,64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 변경 | ⑦ | 공주시 신관동 350번지 일원 | 20,6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하여 사업대상지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2.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20,816 | 감) 169 | 20,647 | 100.0 | |
| 공동주택용지 | 17,825 | 감) 117 | 17,708 | 85.7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공공공지 | 1,384 | 증) 54 | 1,438 | 7.0 | |
| 도로용지 | 1,607 | 감) 106 | 1,501 | 7.3 |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8 | 20~ 23 | 보조 간선 | 949 (150) | 대로 3-5 | 대로 1-2 | 일반 도로 | 신관동 | '85.12.28 | set-back(B=3, L=109) ()는 구역내 |
| 변경 | 중로 | 1 | 8 | 20~ 23 | 보조 간선 | 949 (109) | 대로 3-5 | 대로 1-2 | 일반 도로 | 신관동 | '85.12.28 | set-back(B=3, L=109) ()는 구역내 |
| 기정 | 소로 | 1 | 32 | 10 | 국지 도로 | 65 | 중로 1-8 | 소로 2-165 | 일반 도로 | 신관동 | '85.12.28 | |
| 기정 | 소로 | 2 | 165 | 8 | 보행자 전용도로 | 67 | 소로 1-32 | 6호 근린 공원구역계 | 특수 도로 | 신관동 | '85.12.28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1-8 | 중로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구간 축소 ■ 변경구간 당초) 150m 변경) 109m, [감]44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적측량결과 반영으로 인한 편입구간 축소 |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공공공지 | 대로1-2호선변 | 26,005 (1,384) | - (증)54 | 26,005 (1,438) | '97. 4.19 | ()는 구역내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① | 공공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면적 변경 당초) : 1,384㎡ 변경) : 1,438㎡ [증]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으로 인한 편입면적 변경 (증가)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 획 지 | | |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 |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BL-1 | 1BL | 17,825 | 감)117 | 17,708 | 1 | 공주시 신관동 350번지 일원 | 17,825 | 감)117 | 17,708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1BL-1 | 신관동 350번지 일원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8% 이하 |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층수 20층 이하 |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형태와 배치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향상을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
| | | 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의 3속성(색상, 명도, 채도)의 적절한 대비를 갖는 색채 지정 ■ 하단부 : 밝은 갈색 계통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안정감 부여 ■ 상단부 : 단지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 |

6.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구분 | 도면 번호 | 계획내용 | 적용기준 | 비고 |
|------|----------|--------------|---|----------------|
| 차량동선 | ① | 차량출입 허용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측 20m 도로와 남측10m 도로에 교통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 | 하차장측 1개소 추가 |
| | ② | 차량출입 불허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구간 외에 불허 | |

입 법 예 고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개별 숙박 4동 준공에 맞추어 적정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 사용료를 주말, 주중으로 나누어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 틀 마련
- 머물러 가는 공주시 관광을 위한 매개체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주요 개정내용

- 개별 숙박 4동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추가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경영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경영사업소(한옥마을담당)

- 주소 : 공주시 관광단지길 12번지/ 우편번호 314-020

- 전화 : 041)840-8900, FAX : 041)881-9172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실, 원)

| 구 분 | 학생단체(1실 10명 기준) | 일반단체(1실 10명 기준) | |
|-----|-----------------|-----------------|---------|
| | | 주 중 | 주 말 |
| 숙박비 | 100,000 | 100,000 | 120,000 |

비고 :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며,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동, 원)

| 구 분 | 정 원 | 요 금 | | 객실수 (방수) | 비 고 |
|-----|-----|---------|---------|-------------|--------|
| | | 주 중 | 주 말 | | |
| 실속형 | 2명 | 50,000 | 70,000 | 4(1) | 공동욕실 |
| 초가형 | 3명 | 130,000 | 150,000 | 3(1) | 온돌 |
| 전통형 | 3명 | 150,000 | 200,000 | 3(2) | 온돌, 욕조 |
| 일반형 | 3명 | 80,000 | 100,000 | 2(1) | 온돌 |
| | 3명 | 100,000 | 120,000 | | 온돌, 욕조 |
| | 15명 | 200,000 | 250,000 | 1(3) | 욕조 |
| 고급형 | 6명 | 150,000 | 200,000 | 4(2) | 온돌, 욕조 |
| 양반형 | 4명 | 150,000 | 200,000 | 2(2) | 온돌, 욕조 |
| | 9명 | 200,000 | 250,000 | 2(3) | 온돌, 욕조 |

비고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목적실 사용료

가. 숙박하는 자가 사용 할 경우: 무료

나.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 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주시 주최·주관일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사용가능),
16:00 이후 퇴실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오토캠핑장 사용료: 20,000원/1일 1대

6. 야외 바비큐장 시설사용료: 30,000원/1일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 구 분 | 감 면 율 | |
|---|------------|------------|
| | 단 체 숙박동 | 개 별 숙박동 |
|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20퍼센트 | 20퍼센트 |
|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 | 20퍼센트 | |
|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 20퍼센트 | |
|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10퍼센트 | 10퍼센트 |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0퍼센트 | 10퍼센트 |
| 6.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0퍼센트 | 10퍼센트 |
| 7.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 10퍼센트 | 10퍼센트 |
| 8.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사이버 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 10퍼센트 | 10퍼센트 |

공주시 보건소 공고 제2014 - 2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증가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증액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3조 지급대상 참조

- 출산출하금 지원대상자 확대(첫째 미지급 → 첫째 포함 지급)
- 출산축하금 지원금 확대(첫째500천원, 둘째1,000천원 셋째2,000천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거주지 제한 확대(3개월 전 → 6개월 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 4)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14-802 충남 공주시 의당로 23(신관동) 공주시 보건소
- 전화: 041)840-8010, FAX: 041)840-2341

-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출산담당 시향숙(041-840-80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입한 자” 를 “전입한 사람”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주시” 를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주시” 를 “시”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출산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생아 또한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중 “공주시에 전입하는 자” 를 “시에 전입하는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주시” 를 “시” 로, “자(단)” 을 “사람(다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모 모두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이” 를 “ 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3월” 을 “6개월” 로, “자에 한한다)” 를 “사람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신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5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100만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자녀의 수는 시에 전입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수를 적용하며,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의 제목 “(지급방법)” 을 “(지급 신청 및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안내하고, 신고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4조의 지급기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읍장·면장·동장이 별도로 확인 후 지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환수 조치) ① 읍장·면장·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제 호 | | | |
| 대상자 (신생아)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성별 |
| | 출생일자 | 년 | 월 | 일 | 출생장소 |
| | 자녀수 | 의 자녀 중 | | | 번째 |
| 부 | 성명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모 | 성명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부모 이외)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아래를 작성합니다. | | | | | |
| 보호자 인적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대상자와의 관계 |
| | 보호 사유 | | | | |
| 연락처 | 자택 | | | 휴대폰 | 이메일 |
| 공통사항 입금계좌 | 은행명 : | | 예금주 : | | |
| | 계좌번호 : | | | | |
| <p>「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와의 관계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 귀하</p> | | | | | |
| 지원대상여부 확인자 | 소속 | | | 직급 | 성명 (인) |
| <p>※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p> <p>※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p> <p>→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발전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에서 출생한 <u>신생아와 공주시로 전입한 자</u>에 대한 보상 등 공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 <u>전입한 사람</u>----- -----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u>공주시</u>에 전입하는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에게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p> <p>4. (생략)</p> <p>5.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타 시·도에서 <u>공주시</u>에 전입함으로써 소요되는 차량 이전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p> |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공주시(이하 “시”라 한다)</u>----- ----- -----.</p> <p>4. (현행과 같음)</p> <p>5. ----- ----- <u>시</u>----- ----- -----.</p> |
| <p>제3조(지급대상) ① 보상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p> <p>1. <u>출산양육지원금: 부부 중 1인이 3월 이상(출산일 기준)</u></p> | <p>제3조(지급대상) ① ----- -----.</p> <p>1. <u>출산양육지원금: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출산일 기준으</u></p> |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생하여 신고한 자 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주시에 전입하는 자

3. · 4. (생략)

5.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충청남도외의 타 시·도에서 공주시에 전입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는 자(단, 전국번호판 소유자 제외)

② 미혼부·미혼모로부터의 출생 또는 신생아의 출생전 부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신생아와 함께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3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제4조(지급기준) 보상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생아 또한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2. -----시에 전입하는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5. -----
-----시-----
-----사람
(다만-----)

② 부모 모두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이 -----
-----.

③ -----

-----6개월-----
-----사람만 해당한다.

제4조(지급기준) -----
-----.

1. 출산양육지원금: 신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1인당 80만원 이내에서 지급 (자녀 1인당 1회에 한함)

2. ~ 5. (생략)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공주시 홈페이지와 공주시보에 공고한다.

<신설>

<신설>

1. 출산양육지원금: 신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5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100만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자녀의 수는 시에 전입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수를 적용하며,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안내하고, 신고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4조의 지급기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조치) ① 읍장·면장·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4 - 1150호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 있는 점용허가 등의 절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규제가 되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음(안 2조)

-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안 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산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산림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8422 FAX : 041) 840 - 232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점용료 산출기준 요율표

| 구 분 | 산 정 방 법 |
|--|--|
| 1. 전기통신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 물에 유사한공작물과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50원, H주인 때에는 800원으로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
|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
|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용공고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경찰관 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 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
|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
| 7.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공공작물 및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

| 구 분 | 산 정 방 법 |
|--|--|
| 8. 기존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지하도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또는 표시된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
| 9.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
| 10. 토석채취 | 당해연도 당해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산정한다. |
| 11. 전 각호의 게시된 것 외에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설치 |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4-1197호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현행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성립 후 집행 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4-5호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안 제7조)
 -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복성 검토 등
- 위원회 회의(안 제10조)
 - **본 예산 편성 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
- 위원의 제척·회피(안 제13조)
 -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금지
- 용역실명제(안 제16조)
 -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함.
-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안 제17조)
 -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시정 보완 요구
- 연구결과의 평가(안 제18조)
 -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 평가
- 용역결과의 공개(안 제19조)
 -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전행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3.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 ~ 2014. 10. 21(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0월 21일까지 공주시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14-702
- 전화번호 : 041-840-2029 FAX : 041-840-2306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

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사·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해당 연도에 추진한 용역의 결과 평가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용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고,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은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국·단장, 담당관·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물과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공주시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용역 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6호서식의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 | | |
|------|---|---|
| 제출번호 | 제 | 호 |
|------|---|---|

| | |
|-----|--|
| 용역명 | |
|-----|--|

| | |
|-------|-------|
| 제 출 자 | |
|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

용역요

타기관 공동수행 여부

-
-

제안이유

-
-

사업목적

-
-

외부 용역의 필요성

-
-

사업내용

-
-
-

용역기간 :

계약방법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
-

※ 별첨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용역 추진계획 및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 | |
|---------------------------|---|
| 심의 안건 (용역명) | |
| 용역추진 계 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시기 :◦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유사 선행연구 내역 (최근 5년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명◦ 주요내용--- |
| 기존 연구 용역과의 차별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진행상황 점검표

| | | | | | |
|--------------|--|-----|---------------|----------------|----|
| 용역사업 개요 | ○ 사업명 : ○ 주요내용 - - | | | | |
| 용역계약 | ○ 계약방법 :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탁자 : | | | | |
| 점검일 및 점검자 | 점검일 | 점검자 | 확인자 | | 비고 |
| | | | 용역 소관 업무담당 | 용역 소관 업무부서장 | |
| 점검결과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 | | | |
| 조치 사항 | | | | | |

용역 결과 평가서

| | | | |
|-------------|------------------------------------|----------------|---------|
| 학술연구 용역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
| 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
| 연구방식 |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 | |
| 연구자 선정방식 |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
| 주요 연구결과 | | | |

| 평가항목 | 평가 의견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 | | | | | |
|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 | | | | | |
|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 | | | | | |
| 평가 결과(총평) | | | | | | |

| | |
|-----|--|
| 평가자 |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
|-----|--|

관리번호 : ○○○○ - ○○

용역사업관리카드

(용역명 :)

※ 관리번호는 연도 - 부서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용역사업 계약체결 현황

| | | | |
|-----------------------|--|---------------|--|
| 연구과제명 | | | |
| 부서명 | | 담당자 (직·성명) | |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방법 | |
|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대표) | | | |
| 계약 일반사항 |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 | |
| 사업개요 |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 | |
| 그 밖의 사항 | | | |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 | | | |
|----------------|--|-------|----|
| 연구용역명 | | | |
| 연구기간 | | 연구사업비 | 천원 |
| 목 적 | | | |
| 활용계획 | | | |
| 활용시기 | | | |
|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 | |
| 기대효과 | | | |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 | | | |
|----------|--|-------|----|
| 연구용역명 | | | |
| 연구기간 | | 연구사업비 | 천원 |
| 목 적 | | | |
| 활용내역 | | | |
| 활용효과 | | | |
| 추후 활용계획 | | | |
| 문제점 및 대책 | | | |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영 요령 용역분야 원가심사

제4절 원가심사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

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실비변상) ①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14-119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2자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상 과실에 대한 정상참작 명시(안 제2조제1항)

-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나.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죄가안됨’의 결정 시에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안 제2조의2항)

- 수사기관 결정 통보와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 요구

다. 재산등록 불성실 등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 징계감경 제한 (안 제4조제1항)

- 「공직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는 공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의 경우에도 공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

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별표 1)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토록 명시
- 용어 및 인용조문 정리
 - 제4조
 - 음주운전 사건비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 ⇒ '지도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840-2069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부터 별표 6까지 적용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1”을 각각 “별표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u>공적</u>, <u>뇌우치는 정도</u> 및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 및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단서 신설></p> <p>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p> |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u>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 ----- ----- -----.</p> <p>1. ----- -----<u>.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부터 별표 6까지 적용</u></p> <p>2. -----</p> |

1. (생략)

2.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4. (생략)

② (생략)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

1. (현행과 같음)

2. -----

--- 지도사는 -----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련도, 규제개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 | | |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급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그 밖에 |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에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에 |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견책 |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5. 비밀 업무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
|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마. 그 밖에 |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
| | 별표 2와 같음 | | | |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공급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4-1203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현재 원인자 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일괄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자 부담금 금액이 클 경우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 규제 개혁일환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여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를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하는 경우 [별표5]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최대 4회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로 개정.

- 별표 개정

[별표5], 원인자 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추가

3. 추진일정

- 조례 일부개정 방침결정 : 2014. 9 월
- 규제심사 및 조례안 입법예고 : 2014. 10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0 월
- 공주시의회 상정 : 2014. 12 월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다. 관계법령 발췌문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 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할 경우에는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4회의 범위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p> <p>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1)</p> | <p>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p> <p>⑤ ----- -----.</p> <p>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할경우 [별표5]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최대 4회,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p> |

[별표5]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 | | |
|---------|-----|---------|------------|
| 수 전 위 치 | 공주시 | | |
| 급 수 구 경 | | 공 사 구 분 | 신규, 개조, 임시 |
| 원인자부담금 | 원 | | |

| 구 분 | 금 액 | 납 부 시 기 | 비 고 |
|-----|-----|---------|-----|
| 1회 | | | |
| 2회 | | | |
| 3회 | | | |
| 4회 |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문]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

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